

영등포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6.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4호로 2015년 5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안 제2조, 제5조제2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32조)
- 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 (안 제3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안 제2조 제3호,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 라. 부칙의 조례 유효기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

- 현행 조문의 ‘시장 활성화 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¹⁾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며,
- ‘상권 활성화 구역’이란 ‘시장 활성화 구역’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장이나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상점가”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인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해당구역에 일정수 이상의 점포²⁾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최근 2년간 인구·사업체수 감소)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구청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구역을 말하므로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타당함.

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전통시장으로 통일

- 종전 '전통시장'의 개념은 상업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하였고, '전통시장'을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등록시장'(대규모 점포)과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였으나,
- '전통시장'의 개념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경 되었으며,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통합 조정 되어 본 조례에도 이를 반영 하려는 것임.

2)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 700개,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우 : 400개

- 현재 우리구 총 25개소의 점포 중 전통시장은 13개소 상점가는 10개소, 기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상세내역 별첨)

다.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며, ‘임시시장’ 장소가 토지의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신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유(법 제14조 제1항 각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

-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 제출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개설 요건 완화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부칙 유효기간 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4.10.22.제정되어 2016.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었으나,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역

연번	시 장 명	소 재 지	구 분
1	영등포기계상가	양평동1가 247	전통시장
2	양남시장	양평동1가 30	
3	영등포유통상가	당산동2가 30-2	
4	동남상가	영등포동5가 24	
5	삼구시장	영등포동5가 19	
6	영신상가	영등포동5가 18	
7	영일시장	문래동3가 10	
8	도림시장	도림동 176	
9	대신시장	신길동 116-15	
10	(주)신영사려가	신길동 255-9	
11	신동시장	신길동 259-4	
12	(주)사려가시장	신길동 254-1	
13	대림중앙시장	대림동 1075-47	
14	조광시장	당산동1가 184	
15	로타리상가	영등포동5가 20	
16	제일상가	영등포로 225	
17	남서울상가	영등포동5가 16	
18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동2가 335	
19	우리시장	대림동 904-20	
20	영등포(시장)기계공구상가	영등포동2가 255	
21	영등포시장지하도상가	영등포동5가 20	
22	영등포역지하도상가	경인로 지하 843	
23	영등포로타리지하도상가	영등포동3가 441	기 타
24	양평시장	양평동4가 161	
25	영진시장(A동)	신길동 2365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전문개정 2010.6.8.]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6.28.]